

2005. 2. 1(화). 10:00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

- | | |
|-----------------------------------|---|
|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4 |
| 3.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 8 |

총무위원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 20
- 나. 회부일자 : 2005. 1. 20
- 다. 의안번호 : 제2005 - 2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5. 1. 28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비영업용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과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나. 주요골자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승합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로 구분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의2)
 - 전방조종자동차(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는 생계형승합차로 구분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소형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5조의2 제1호)
 - 그 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토록 함.(안 제15조의2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3%, 66%, 100%로 점진적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조치.
- 시행초기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로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중 적용세율의 50%추가감면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형승합차 세율(연간 65천원)을 적용」 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및 도의 지시에 의거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한 것은 자동차 연세액 납부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이 아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4.12.27일자 도민일보등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 2005.1월 현재 군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9,239대이며, 7~10인승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수는 2,067대이며, 이중 전방조종자동차는 103대로 파악됨.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4년간 감면액이 승용차종에서 856백만원, 전방조종차종에서 25,775천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과세율 및 조례안 경감률

- 2005년도 : 승용자동차의 “33.0%” ⇒ “16.5%”
- 2006년도 : 승용자동차의 “66.0%” ⇒ “33.0%”
- 2007년도 : 승용자동차의 “100%” ⇒ “50.0%”
- 2008년도 : 승용자동차의 ⇒ “100%”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급격한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과세저항과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형 자동차(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 적용 차량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하라는 지시에 의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 형식과 절차 및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 20
- 나. 회부일자 : 2005. 1. 20
- 다. 의안번호 : 제2005 - 5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5. 1. 28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재해·재난등 각종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소방관서 신설 계획에 따라 가조소방과 출소를 도 소방본부에서 신축후 양여확약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2주차장 설치 대상지의 위치변경 및 토지구입비가 30%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재산종별	소재지	물건 지목	수량 (㎡)	예정금액 (천원)	비 고
소방파출소	행정재산	가조 마상 467-6	건물	291	216,309	도비로 건축
제2주차장	행정재산	4필지		1,274	1,542,200	1,995백만원 소요
		거창 중앙 150-3	대	126	191,520	위치변경
		150-4	잡	443	691,080	
		151-3	대	205	311,600	
		157-4	대	500	348,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조 소방파출소 건물신축

- 가조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거창군소유의 토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후 거창군에 무상양여 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2005.12.31까지 부지사용 승낙을 한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양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소방업무는 시군의 지원업무로 소방청사 신축 토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하고 시설물설치는 도 소방본부에서 건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됨.
- 동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부지면적은 1,384m²이며, 119백만원에 구입한 것이며, 건축되는 소방파출소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2층 건물로서 연면적 291m²이며, 2005.4.1부터 2005.6.30일까지 도비 216,309천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
- 대상부지는 관리지역으로 소방파출소 건축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공영 제2주차장 설치대상지 변경 취득

-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2004.7월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일원에 1,459 m²를 승인하였으나 제11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예협동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검토결과 제2주차장 대상사업지 소유자중 1인이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진입로 확보가 불가하며, 조성된 제1주 차장도 주차가능대수가 28대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1주차장에 연접한 원협부지를 확보하면 70대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관리 운영이 용이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지가 변경되면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된 제2주차장 사업비 20억원 (국비12, 군비8)으로, 공사비는 제1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교부세8, 군비5)중 집행잔액 3억 5천만원으로 충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는 185㎡ 감소되나 사업비는 675백만원 증가
- 대상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차장법에 제한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주차장부지내 건축물 현황

구분	구조	면적(㎡)	건축년월일	추정가액	비고
계 4동		1,265.3		381,310	원예협동조합
점포 및 업무시설	철콘/스라브	599.1(1층334.4 2층264.6)	84.7.16	248,625	
점포 및 사무실	"	128.3(1층 64.2 2층64.1)	85.12.5	47,176	
판매시설	경량철골/스레트	465.9	91.12.30	77,805	
점포시설	경량철골/판넬	72.0	92.7.23	7,704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가조 소방 파출소는 가조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이미 부지 취득을 승인한바 있고 동 부지위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절차나 법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은 당초 제2주차장을 지정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진출입로의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제1주차장 앞 원예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제1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 본 토지에는 지상에 건축물이 4동 1,265㎡가 현존하고 있으나 매입과 동시에 철거할 계획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입구 상가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으나 토지 매입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 주차장 설치후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직영 또는 위탁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인근 주민의 개인전용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일방통행인 시장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 21
- 나. 회부일자 : 2005. 1. 21
- 다. 의안번호 : 제 2005 - 7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5. 1. 28

2. 변경안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시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나
-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노인회육성 자립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2000.12월 거창군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한 것에 대하여 반환청원이 있어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3.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단 위 : 천원)

구 분	2004년말 현 재 액	2005년 운용계획안			2005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증 감	
당초 계획	795,810	127,853	0	127,853	923,663
변경 계획	795,730	127,853	100,271	27,582	823,312

4. 검토의견 요지

- 거창군노인복지기금은 1999.4.15 제정된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2004년말 현재 적립액은 795,810천원이며, 금년도는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27,853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당초 운용계획안을 승인하였음.
- 변경계획안에서 반환코자하는 (사)대한노인회거창군지부의 노인회 자립기금 100,271천원은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전 정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노인회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군기금이 아닌 노인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인회 자립기금을 군기금화 하려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고 해당법인체의 기부동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의 승인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없이 군 기금화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반환요구는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소멸시효이내인 것으로 정당한 요구로 검토됨.
- 기금목표액 10억원 달성단계인 현시점에서 조성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시의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반환하게 될 기금에 대하여는 상조회운영금으로 이용할 계획인바, 실제 상조회비 납부자는 363명(경로당 150개소)으로 노인회 자립기금을 상조회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노인자립기금 조성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본 기금은 금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 수입 27,853천원을 적립하여 2005년도말 923,663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2005년도 기금관리 운영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전 92년부터 2000년까지 도비와 군비 및 자부담으로 조성된 100,271천원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 관련 법규와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목표액 10억원 달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 조성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시의 공무원이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반환된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